

해양수산동향

Vol. 1221

2006. 7. 25

부연구위원 조정희
TEL 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2006년도 상반기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및 전망

01 2006년 상반기 동안에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4차례 개최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14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규범의장은 7월 말에 의장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 안은 포괄적 금지 및 개별적 금지, 금지/허용 보조금 종류, 개도국 특별대우 등 수산보조금 협상 핵심 주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임

02 브라질을 포함한 피시프렌즈 그룹은 몇 개의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수산자원 고갈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과잉어획능력과 연관된 보조금만을 금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음

03 규율대상 범위의 경우, 뉴질랜드, 미국 등은 잡는어업은 물론 가공, 유통,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보조금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규율범위를 잡는어업에 한정시키자고 주장함. 또한 뉴질랜드는 소규모/전통어업을 모든 회원국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 특별대우(S&D)의 일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캐나다 등은 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04 7월 말 의장안이 협상 테이블에 제출된다고 해도 의장안대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월 이후 과잉어획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WTO/DDA 전체 협상에 있어 7월 23일에 개최된 주요 국가들(G6)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임

WTO/DDA 협상 종반에 접어들어

당초 2005년 말을 시한으로 진행되었던 WTO/DDA(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개최된 홍콩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시한이 2006년 말로 늦춰졌다. 따라서 2006년 협상은 WTO/DDA 협상내용의 상당 부분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06년에만 2월, 3월, 5월, 6월 등 4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었고, 회원국들 역시 예전과는 달리 자국의 입장을 협정문에 반영시키기 위해 14건의 제안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협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실 지난해 개최된 홍콩 각료회의를 통해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야기시키는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당초 규범의장 초안이 통과되면서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원칙은 이미 제시된 상태였다. 따라서 올 협상은 이 규범의장 초안을 토대로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야기시키는 보조금의 실질적인 종류와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개도국 S&D(특별대우)에 관한 사항과 같은 세부적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2006년 상반기 협상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협상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브라질 등 9개국, 문안에 근거한 협상 개시 주장

브라질 등 9개국은 지난 2월 개최된 제24차 협상에서 '문안에 근거한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의 진행을 요구하는 공동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2006년 협상의 포문을 열었다. 즉 자원 조성 등 허용보조금 위주의 개별보조금 논의, 수산보조금 규율의 적용범위, 개도국 S&D 등에 대한 협의와 아울러 조속히 문안에 근거한 협상을 개시하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수산보조금 금지 방식으로 포괄적 금지방식(Top-down)과 개별적 금지방식(Bottom-up)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도 주장하였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가 홍콩 각료회의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각국의 제안서 내용보다는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제24차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개도국 회원들은 S&D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발언하였으며, 특히 필리핀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Red Box)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한 수산보조금 금지방식과 관련한 개도국 우대를 주장한 국가도 있었는데, 예컨대 바베이도스는 개도국들의 어업개발 필요성과 이를 위한 향후 지원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금지방식이 적절함을 역설했다.

노르웨이는 협상전개 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과정을 통해 과잉어획능력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금

지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협상은 수산보조금의 과잉어획능력 유발가능성을 토대로 금지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협상시한이 촉박하여 개별 이슈의 논의보다는 문안 중심의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 구조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협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정문안 작성과 관련하여 문안작성 이전에 문안의 구성요소 및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각국이 협정문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장의 책임이 아닌(Top-down 방식) 각국의 기여에 기초한(Bottom-up)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도 아울러 강조했다.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의 협상은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에 한해서만 논의해야 하며, 올해 4월 이전까지 각국이 제출한 문안을 바탕으로 의장안을 작성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뉴질랜드, 유통 및 가공분야까지도 규율대상에 포함할 것 주장

3월에 개최된 제25차 협상에서는 뉴질랜드를 비롯한 5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뉴질랜드는 수산업의 잡는어업, 가공 및 유통·판매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보조금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의 중심에 섰다. 또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예, 산업용 연료 보조금·면세유 포함)이라도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초래할 경우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였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제안내용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은 뉴질랜드의 규율대상 확대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규율 적용범위를 잡는어업에 한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EC, 일본, 태국, 홍콩 등은 규율의 적용범위를 잡는어업으로 한정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캐나다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어획능력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과잉어획능력을 초래하는 어선관련 보조금 규율에 보다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역시 유통 및 가공분야까지를 규율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정성 없는 보조금을 규율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현행 보조금 협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미국은 뉴질랜드 제안서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두둔하면서, 금지제외 보조금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규제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규율범위에 대하여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 차원을 넘어서 비농산물 시장 접근(NAMA) 및 서비스 협상의 범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반시설과 양식업의 규율 제외, 유예기간 장기화 등을 요구하였다.

브라질, 협정문 형태로 제안서 제출

3월 회의에서 브라질은 2월 제출된 제안서를 협정문 형태로 바꾸어 다시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자원왜곡 판단기준 및 복잡한 통보항목 등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은 브라질 제안서가 현행 보조금협정으로 규율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일반적인 기반시설(General infrastructure)과 같이 현행 보조금협정으로 규율 가능한 내용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소규모 어업 및 전통어업이 개도국 S&D의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EC는 전통어업에 대해서만큼은 허용보조금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중국은 브라질 제안서상의 S&D 목록 중 하나인 연료 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으로 수산보조금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잡는어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브라질 제안서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자원왜곡 및 무역왜곡 부존재라는 조건하에 인정되는 허용보조금은 실제로는 조치가능 보조금이며, 소규모 어업 및 어항시설 보조금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제시된 '명백한 자원 위험(Patently at risk)'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각국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브라질은 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은 구분되어야 하고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변하였으며, 연료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에만 허용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일·대만 3개국 공동 제안서 제출

5월 개최된 제26차 협상에서는 한·일·대만 3개국 공동제안서 이외에 EC, 브라질, 미국의 제안서를 포함해 총 4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회원국이 사안별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3개국 공동제안서는 적용범위, 금지 및 허용보조금 목록(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의 정의 포함), 개도국 S&D 및 유예기간 등을 포함한 협정문 초안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제안서에 대해 FFG 국가들은 금지보조금 목록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부속서 8로 인해 금지보조금 적용상의 허점(Loophole)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고, 6년의 유예기간 적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금지보조금 목록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는데, EC 및 노르

웨이는 금지보조금은 과잉어획능력 유발 보조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동 제안서의 금지보조금 목록을 환영하였다. 반면, FFG 국가들은 과잉어획을 유발시키는 수산보조금을 제외하고 있어 협상의 목표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다른 회원국들도 부속서 8의 어선건조 보조금 상세조건이 보조금 우회지급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보조금으로서 본래 의도를 희석시키는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일본은 추후 감축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차 제안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규모 어업의 허용보조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의 분리 여부,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공통적 적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매우 상이한 입장을 표출하였다.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등은 이를 S&D 하부 규정에 두어 개도국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EC, 노르웨이 등은 선진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도국 S&D와 관련해서도 EC,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개도국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우대조항(즉, 자원고갈에 대한 우대)을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페루와 멕시코 등은 개도국 세분화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브라질과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적용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동 기준이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산선진 개도국에 의한 자원고갈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EC,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는 제안서 제출

EC는 동 제안서에서 과잉어획능력 위주의 금지보조금 목록을 제시하고, 강화된 수산전문가 그룹(PGE)의 역할과 보조금 통보의무, 검토조항(Review clause) 등을 강조하였다. 이 제안서에 대해 대다수 국가는 제안서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해 세부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논리적 설득보다 자국 입장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대체적으로 과잉어획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EC가 제안한 금지보조금 목록과 관련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및 노르웨이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멕시코 등 FFG 국가들은 불만을 표출하였다. 한편 EC는 협상 말미에 미국의 자국 제안서 비판에 대하여 미국측이 협정문안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써 협상에 대한 기여가 없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브라질, 수정된 제안서 다시 제출

브라질은 포괄적 금지방식에 기초한 협정문 초안을 제시(브라질의 협정문 관련 3번째 제안서)하였는

데, 종전안과 비교해 볼 때, 광범위한 개도국 S&D 허용 및 엄격히 제한된 소규모 어업기준 제시 및 조치가능 보조금 부류를 신설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이번 협상에서 브라질 수산양식부 장관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도국 S&D에 대하여 백지수표 발행은 허용될 수 없으며 명확한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장관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함으로써 대다수 개도국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는 조치가능 보조금의 적용기준과 적시된 보조금과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부정적 효과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과 특징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ASCM상 특정성 정의로부터의 탈피를 비난하고, 일본과 중국은 수산업에 혜택을 주는 사회간접자본에는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도 포함되므로 이를 구분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분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브라질은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면서 수산이익에 혜택을 주는 용역이나 시설의 예로 어항을 언급하였다.

미국, 어선감척사업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미국은 2005년 5월에 제출한 어선감척사업 제안서를 조문화시켜 협정문 형태로 제출하였다. 미국이 감척 보조금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가 이를 지지한 데 비해 대만, 터키, 일본 등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 제안서의 감척사업 조건들과 관련하여 브라질은 조건과 조치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중국은 조건들이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감척사업 시행 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측은 감척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정수 관리, 쿼터 설정, 어업노력량 제한 등 건전한 어업관리제도를 보유한 개도국에 대해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어선을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금지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바, 이는 별개의 문제이나, 상술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치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였다.

소규모 그룹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 개시

6월 협상에서는 공식협상 및 소규모 그룹 협상을 통해 협정문 초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개시되어 의장 초안 도출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다. 공식협상에서는 회원국들이 사안별로 종전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논의되었으나, 소규모 그룹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 도출을 목적으로 의장 주도하에 핵심

사항별 중점논의가 진행되어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특히 소규모 그룹 협상에서는 그간 뉴질랜드 제안서 등을 통해 어획활동부터 양식업 및 가공·유통업까지 규율범위가 확장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EC 등 다수 국가들이 선박문제(boat problem)에 협상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공 및 유통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어획과 관련 있는 활동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금지와 허용보조금의 경우, 의장은 FFG측과 한국·일본·대만 및 EC 양측 간에 도하 각료선언문의 위임사항 수행을 위한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간 과잉어획능력 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과잉어획 보조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협상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우리 대표는 과잉어획을 유발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논의할 용의가 있으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며, 명백한 관련성(clear link)이 있는 보조금만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의견개진이 계속되어, 자연스럽게 과잉어획 보조금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류보조금의 경우 미국은 과잉어획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원임금, 연료, 어구 제작, 미끼, 얼음 등 어업운영비용(operational cost)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연료가 과잉어획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표는 국가별로 세법에 따라서 정당히 걷지 않을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바, 브라질은 보조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유류보조금이 가변 비용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어획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연료문제는 단순히 가격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사전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유류보조금이 분명히 과잉어획과 관계가 있으며, DDA협상은 자원왜곡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무역왜곡도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장은 유류보조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이 개진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상태를 인정한 채로 추후 논의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가공유통 보조금, 개도국 S&D, 투명성과 통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각 회원국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반기 협상,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논의 집중 예상

2006년도 상반기 수산보조금 협상은 각국이 자국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협상이 다소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장이 7월 말 의장안 작성을 위해 소규모 그룹 협상을 개최함에 따라 협상이 가속화되었다. 지금까지의 협상동향을 기초로 향후 협상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바대로 과잉어획능력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잉어획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난 소규모 그룹 협상에서 거의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산보조금을 규율하는 데 있어 Top-down 방식보다는 Bottom-up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크게 금지 보조금과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허용 보조금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금지와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나누어져야만 Top-down 방식을 주장하는 FFG 국가들이 수산보조금 전면 철폐를 포기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보조금을 조치가능 보조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Bottom-up 방식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수산보조금의 전면적인 철폐보다는 금지 및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산보조금을 규율하는 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조치가능 보조금에 포함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자원왜곡 및 무역왜곡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이런 입증책임 또한 보조금 지급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DDA 전체 협상에 있어 7월 23일에 개최된 주요 국가들(G6)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일정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표 1>

2006년도 상반기 제안서 제출현황

회 차	제출 제안서	제안서 주요내용
제24차 (2월)	브라질 등 9개국 공동제안서 (TN/RL/W/196)	-문안에 근거한 협상 개시를 주장 -수산보조금 규율구조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성을 제시
제25차 (3월)	뉴질랜드 제안서 (TN/RL/GEN/100)	-Top-down 방식에 의거하여 현행 ASCM의 조문개정 형식으로 협정문안을 제시 -수산업의 잡는어업, 가공, 유통, 판매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보조금이 적용대상 -모든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개 보조금 제시 -경제규모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화된 소액보조(Deminimis) 형태로 개도국 S&D 인정
	일본 제안서 (TN/RL/W/201)	-어획능력 증강을 초래하는 어선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 금지 -S&D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어획활동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개도국의 경우에만 인정 -유예기간은 5년
	대만 제안서 (TN/RL/W/202)	-어업인 사회보장 및 복지 지원을 허용보조금으로 제시
	인도 제안서 (TN/RL/GEN/203)	-개도국에게 소규모 어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소규모 어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브라질 제안서 (TN/RL/GEN/79/Rev.1)	-수산보조금 특별규율을 양식,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모든 잡는어업에 적용 -무역 및 자원왜곡 효과, 자원상태 등을 조건부로 일부 보조금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 -실제로 보조금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국가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의 책임 -자원왜곡이 없을 것을 전제로 어선건조, 현대화, 어구구입, 낙후 지역 보조 등과 같은 지원을 허용 -어업 자원상태 포함, 적당 보조금액 등 상세한 정보 통보 요구 -금지보조금은 3년 내 철폐 (개도국 5년 내 철폐)
제26차 (5월)	한·일·대만 3개국 공동 제안서 (TN/RL/GEN/114)	-적용범위, 금지/허용 보조금 목록(소규모·전통어업 정의 포함), 개도국 S&D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한 협정문 초안 제시
	EC 제안서 (TN/RL/GEN/134)	-과잉어획능력 위주의 금지보조금 목록 제시 및 강화된 수산전문가 그룹(PGE)의 역할과 보조금 통보 의무, 검토조항 등 강조
	브라질 제안서 (TN/RL/GEN/79/Rev.2)	-포괄적 금지방식에 기초한 협정문 초안 제시
	미국 제안서 (TN/RL/GEN/127)	-미국은 2005년 5월에 제출한 어선감척사업 허용보조금 제안서를 조문화시켜 제안서로 제출
제27차 (6월)	한·일·대만 3개국 공동 제안서 (TN/RL/GEN/114/Rev.1)	-지난 5월에 제출된 바 있는 협정문 초안 제안서를 부속서 8 부분의 어선건조 허용조건 부분만 수정
	브라질 제안서 (TN/RL/GEN/79/Rev.3)	-Rev.2 제안서와 비교해 볼 때, 소규모 어업에 대한 조치가능 구분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소규모 어업에 대한 특별 고려를 불허하고, 개도국의 전통어업만을 허용 -금지에외 보조금 및 개도국 S&D상 허용보조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선진국이 부담하도록 선진국의 책임 강화 -검토조항 신설로 회원국의 이행현황을 매 5년마다 검토

	아르헨티나 제안서 (TN/RL/GEN/138)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련하여, UNCLOS 관련규정을 토대로 EEZ 잉여어족자원 개발, 해외선단 대체 및 RFMO의 쿼터소진을 위한 어선건조 등 어획능력 증강 보조금 허용
	뉴질랜드 제안서 (TN/RL/GEN/141)	-허용보조금은 기반시설(어촌개발, 어항시설, 유통시설, 상하수도 지원 등) / 어업인 실업구제, 조기퇴직, 직업교육 / 전통어업을 허용하되, 소규모 어업은 제외 / 개도국에 대한 입어로 지원 / 양식업 보조금 등 -자원관리 및 관계법령 집행은 보조금 범위에서 제외

<표 2>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

이슈		주요 회원국의 입장
규율 범위	잡는어업	대다수의 국가들
	양식어업 포함	뉴질랜드, 브라질
	유통 및 가공 포함	뉴질랜드, 미국
금지보조금	과잉어획능력 연관 보조금	한국, 일본, 대만, EC, 노르웨이, 캐나다
	과잉어획 연관 보조금	FFG 국가 및 멕시코
소규모어업/ 전통어업	소규모 어업	한국, 일본, 대만, 캐나다: 모든 회원국에 적용 뉴질랜드, 솔로몬 제도: 개도국에만 부여
	전통어업	한국, 일본, 대만, EC: 모든 회원국에 적용 뉴질랜드, 인도: 개도국에만 부여
개도국 S&D	선진 수산 개도국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EC, 미국
	선진 수산 개도국 미구분	인도, 중국
투명성 및 통보	미통보시 규제 반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미통보시 규제 찬성	EC
유류 보조금		중국: 규율대상에서 제외 뉴질랜드/브라질: 금지 보조금 미국: 과잉어획과 연관 한국, 일본, 대만, 노르웨이: 어획활동과 직접적 연관 없음 EC: Amber box에 해당
유예기간		브라질: 금지 보조금은 3년(개도국 5년) 한국, 일본, 대만: 6년